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3. 24 선고 2022가단10894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환철

피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희범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안혜영

변론 종결2023. 1. 27.

판결 선고2023. 3.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C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2019. 2. 27.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43,832,276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3,832,276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 1) C은 2013. 3. 27. 주식회사 D(이하 'D카드'라 한다)와 신용카드회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 2) C이 D카드에 대한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자, D카드는 2014. 6. 30.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 C에 대한 신용카드 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 대금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2014. 7. 3.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 3) E은 2016. 5. 20. F 유한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 이 사건 신용카드 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 2016. 5. 23.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으며, F은 2019. 6. 20.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카드 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 2019. 7. 8.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 4) 원고는 이 사건 신용카드 대금채권에 관하여 C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가소95034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1. 9. 15. 'C은 원고에게 40,959,740원 및 그 중 14,288,895원에 대하여 2021.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1. 10. 2. 확정되었다.
- 5) 2022. 2. 18. 기준 이 사건 신용카드 대금의 원리금 합계액은 44,706,051원이다.

나. 피고 및 C의 상속재산분할협의

- 1) G은 1988. 12. 2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6. 6.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2)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8. 4. 8.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들인 피고 및 C은 2019. 2. 27.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 3)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2.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4. 8.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C의 재산상태 등

- 1) C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인 1/2지분과 안성시 H 임야 6,644㎡ 중 2/7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2019년 당시 안성시 H 임야 6,644㎡ 중 2/7 지분 가액은 27,145,485원[=14,300원(2019년 개별공시지가)×6,644원×2÷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다.
- 2) C은 2019년 당시 이 사건 신용카드 대금채무, I은행 대한 대출금채무 27,712,000원을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J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신용카드 대금채권은 이 사건 분할협의일인 2019. 2. 27. 이전에 성립한 것이므로, 원고가 양수한 이 사건 신용카드 대금채권은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인 1/2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어 무자력이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 1) 항변의 요지 피고는 약 10년 동안 연락이 없었던 C을 망인의 임종 무렵에 재회하게 되었고, C과 사이에 C에게 9,500만 원을 지급하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한 것이며, 이 사건 분할협의로 C의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 2) 구체적 판단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수익자 명의로 이전하는 일반적인 사해행위와 달리,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귀속을 확정시키는 행위로서, 사실상 상속포기와 같은 신분상의 행위로서의 성질도 가지고 있으므로,

사해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을 좀 더 엄격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4 내지 6, 9 내지 11, 15호증의 각 기재나 영상, 증인 K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할 당시 이 사건 분할협의를 C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로써 수익자인 피고에 대한 악의의 추정은 반복되었다.

가) 망인은 배우자 L(1986. 1. 14. 사망)과 사이에 피고(1972년생), C(1973년생)을 자녀로 두었는데, C은 2010년경부터 분가하여 살면서 망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망인 및 피고에게 연락을 거의 하지 않았고, 피고가 전적으로 망인을 부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C은 망인이 위독하다는 피고의 연락을 받고 2018. 4. 7. 망인이 입원 중이던 병원에 찾아왔고, 2018. 4. 8. 망인이 사망하여 장례식에 참여하게 되었다.

다) 피고는 2018. 4월 말경 C과 사이에, 망인이 1988년경부터 사망하기 전까지 거주하였던 유일한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단독소유로 하되, 그 대가로 C에게 9,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를 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위 합의에 따라 C의 사실혼 배우자인 M에게, 2018. 7. 18. 3,500만 원, 2018. 11. 15. 4,500만 원, 2019. 3. 28.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10년 넘게 C과 연락이나 왕래를 하지 않았으므로 C이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등 C의 구체적인 재산 상태를 알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C에게 9,500만 원을 지급하면서까지(특히 2019. 3. 28.자 1,500만 원은 피고가 2019. 3. 28.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한 돈이다.) C의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할 특별한 이유나 사정이 없어 보인다.

마) C은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9,500만 원을 지급받은 이후부터 현재까지 피고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있고, 피고의 연락도 받지 않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장현자

별지